

벧푸시 고시 제 호

벧푸시 외국인 유학생 지역활동조성금 교부요강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년 월 일

벧푸시장 하마다 히로시

벧푸시 외국인 유학생 지역활동조성금 교부요강

(목적)

제 1 조 이 요강은 외국인 유학생이 주체인 단체가 외국인 유학생과 시민과의 교류활동 등을 실시할 경우에 예산 범위내에서 벧푸시 외국인 유학생 지역활동조성금(이하 조성금)을 교부하는 것에 관해서 필요사항을 정하고, 이를 가지고 외국인 유학생의 자발적 활동을 촉진시키고, 국제사회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벧푸시의 글러벌화 및 지역활성화를 시도하는 것을 목표로 함.

(조성대상단체)

제 2 조 조성금 교부 대상이 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호 모두에 해당하는 단체로 함.

- (1) 벧푸시내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구성됨
- (2) 단체 구성원은 3명 이상이고 그 인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 유학생임
- (3) 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폭력단원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1991년 법률 제 77호) 제 2조 제 6호에서 규정한 폭력단원. 이하 이 호에서 같음) 또는 폭력단 (동 2조 제 2 호에서 규정한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자가 아님

(조성대상활동)

제 3 조 조성금의 교부 대상이 될 활동(이하 조성대상활동)은 벧푸시내에서 실시될 국제교류, 국제협력 또는 다문화공생을 추진하는 지역활동이고 제 6 조에서 규정하는 신청일이 그

회계연도의 3 월 15 일까지에 종료될 것으로 함. 단, 다음 활동에 대해서는 조성대상이 안됨.

- (1) 영리를 목적으로 한 흥행 기타 그것에 유사한 활동
- (2) 정치활동 또는 종교활동을 주목적으로 한 활동
- (3) 공공의 안전 혹은 질서 또는 건전한 풍속을 해할 가능성이 있는 활동
- (4) 이미 조성금 교부 결정을 받은 활동을 실시하는 단체가 동일 연도내에 실시할 당해 활동과 근사한 활동

(조성대상경비)

제 4 조 조성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경비(이하 조성대상경비)는 별표에서 정하는 경비로 함.

(조성금액)

제 5 조 조성금액은 조성대상경비에 4분의 3을 곱하고 얻은 액수 (천엔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끝수를 잘라 버린 액수) 로 함. 단 20 만엔을 상한으로 함.

(조상금의 교부 신청)

제 6 조 조성금의 교부를 받으려고 하는 단체는 활동을 실시하기 전에 벅푸시 외국인 유학생 지역활동 조성금 교부신청서(양식 제 1 호)에, 다음에 게시하는 서류를 첨부하고 벅푸시장에게 제출해야 됨.

- (1) 활동계획서 (양식 제 2 호)
- (2) 수지예산서 (양식 제 3 호)
- (3) 교부 신청단체 조서 (양식 제 4 호)
-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조성금의 교부결정)

제 7 조 시장은 전 조문에서 규정한 신청을 수수한 경우에는 신속히 활동의 목적 및 내용을 심사하고, 적당하다고 인정했을 때는 조성금의 교부를 결정하고, 벅푸시 외국인 유학생 지역활동 조성금 교부결정 통지서(양식 제 5 호)에 의해 당해 신청을 한 단체에게 통지할 것으로 함.

(활동계획의 변경 등)

제 8 조 조성금의 교부 결정을 받은 단체(이하 교부단체)가

조성대상활동의 변경(시장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제외) 또는 중지하려고 할 경우에는 신속히 벵푸시 외국인 유학생 지역활동 계획변경(중지) 승인 신청서(양식 제 6 호)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됨.

2 위에서 시장이 정한 경미한 변경의 정의는 다음에 게시하는 사항으로 함.

- (1) 조성대상경비의 30% 이내의 감액
- (2) 조성대상활동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활동계획 세부의 변경  
(실적보고)

제 9 조 교부단체는 조성대상활동 종료후 한달 이내에 벵푸시 외국인 유학생 지역활동 실적보고서(양식 제 7 호)에, 다음에 게시하는 서류를 첨부하고 시장에게 제출해야 됨.

- (1) 활동보고서(양식 제 8 호)
- (2) 수지결산서(양식 제 9 호)
-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조성금 액수 확정 등)

제 10 조 시장은 전 조문에서 규정한 실적보고를 수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자세히 조사하고 적당하다고 인정했을 때는 교부해야 할 조성금의 액수를 확정하고 벵푸시 외국인 유학생 지역활동조성금 교부액 확정통지서(양식 제 10 호)로 교부단체에게 통지할 것으로 함.

2 시장은 조성금 액수를 확정된 경우에 있어서 다음 조 1 항의 단서상의 규정에 의해 이미 그 액수를 넘는 조성금이 개산지불로 교부되었을 때는 그 넘는 부분에 해당하는 조성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으로 함.

(조성금 교부)

제 11 조 조성금은 조성 액수를 확정된 뒤에 교부할 것으로 함. 단 조성금의 교부 결정후부터 조성대상활동이 종료될 사이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경우에는 개산지불로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함.

2 교부단체는, 조성금의 교부를 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벵푸시 외국인 유학생 지역활동조성금 교부 청구서(양식 제 11 호)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됨.

(교부결정의 취소 및 조성금의 반환)

제 12 조 시장은 교부단체가 다음 각호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성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것으로 함. 이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벵푸시 외국인 유학생 지역활동조성금 교부결정취소 통지서(양식 제 12 호)로 통지할 것으로 함.

- (1) 거짓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조성금의 교부를 받았을 때
- (2) 교부를 결정한 활동 이외의 용도에 조성금이 사용됐을 때
- (3) 제 6 조에서 규정한 신청(제 8 조의 규정으로 변경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는 변경신청) 내용과 사실이 심하게 다를 때
- (4) 이 요강의 규정에 위반했을 때
-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

2 전 항목의 경우에 있어서 조성금의 교부결정 취소에 관계하는 부분의 대해서 이미 조성금을 교부했을 때는 기한을 정해서 그 반환을 요구하는 것으로 함.

(위임)

제 13 조 이 요강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정함.  
부칙

이 요강은 고시일부터 실시함.

(제정이유)

시민과의 교류활동 등을 통하여 지역 활성화를 기획하는 외국인 유학생 등의 활동에 대한 조성금 교부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요강을 제정하는 것임.

별표 (제4조 관련)

조성대상경비

과 목	보조대상경비의 내용
보상 비용	외부강사, 후원자 및 통역자에 대한 사례금 등
인쇄 제본 비용	포스터, 전단지, 자료 등의 인쇄비
소모품 비용	활동 실시를 위한 최저한의 문방구, 생활용품, 재료 등의 구매비 (매상으로 회수되는 것은 제외)
통신 운반 비용	우편/택배편 등의 비용. 단 전화요금이나 인터넷요금 등 통신비 등은 제외
광고료	활동을 위해 필요한 광고/선전 비용 등
보험료	활동을 위해 필요한 보험료 (자원봉사 보험 등)
사용료 및 대차료	회장 사용료, 기재등의 대차등의 필요한 경비 등
기타 경비	조성대상활동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비고 시장이 특별히 그 필요성과 적당성을 인정한 것. 단 사무용 전자기기 등 비품 구매비, 단체의 인건비 및 운영비 혹은 음식비는 제외.